#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6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이주영·이준석·천하람

최수진 • 채현일 • 유용원

전용기 · 최형두 · 서천호

성일종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.

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, 관상동맥질환, 수면 무호흡증,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,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,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

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,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

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나.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 의 날로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라.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(안 제9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, 연구·개발사업, 예방·관리사업,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.

##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,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함으로써 비만질환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비만"은 사람의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, 비만질환은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비만으로 인한 조직, 장기 또는 개인의 신체 기능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전신 질환을 말한다.
- 2. "비만질환"이란 병인 및 병태생리가 중복되어 일반적으로 비만과 함께 발생하는 비전염성 질환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,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(이하 "비만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 질환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

단체가 실시하는 비만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비만 예방의 날) ①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,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6조(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 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 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비만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
  - 2. 비만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
  - 3. 비만 치료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
  - 4.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, 치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  - 5.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작성, 수집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
  - 6.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관리, 치료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

관한 사항

- 7. 소아,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비만 및 비만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비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(이 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평가 내용을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등 요청)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자료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비만관리위원회) 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비만 및 비만질환의 기준에 관한 사항
  - 4. 비만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비만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비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3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 는 사람
- 4.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치료, 연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단체나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통계자료 작성 및 역학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비만 및 비만질환의 유병률, 발생 위험 요인과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·분 석하여 비만의 발생률 및 비만질환 발병률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 성하거나,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그 밖에 역학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연구·개발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질환의 예방, 진료 및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·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비만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,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
- ② 그 밖에 연구·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예방·관리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비 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비만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·관리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  - 2.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
  - 3.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
  - 4.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상담인력, 의료인력의 교육 및 양성
  - 5. 그 밖에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그 밖에 예방·관리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치료지원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비만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에 대한 비만질환 진단비용, 치료비용의 지원
- 2. 치료가 필요한 비만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의 지원
- 3. 의료인이 비만 및 비만질환 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
- 4. 비만질환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
- ② 그 밖에 치료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한다.
- 제15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, 소속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 위임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조(비용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제12조에 따른 예방 ·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
  - 2. 제13조에 따른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
  - 3.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
- 제17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비만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벌칙)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